

서대문구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업무유형	비공개 대상 정보명	근거	사유(법령)
상담	가정폭력 피해자상담 및 보호.치료 관련 중 피해자 개인정보 및 시설보호에 관한 사항	1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업무상 개인정보 취득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1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공직자병역 신고공개 관련	병역사항(병동)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서류	1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통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	1호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도시.경관 계획수립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이름, 주민번호, 직위,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	1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의2
자금지원(금융거래)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1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과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의료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 보험관련 자료 등 확보한 모든정보	1호	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긴급지원대상 관리	지원대상자의 채무액 등 신용정보	1호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제7항
노인복지사업 추진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 (학대노인.가족 및 학대 행위자 인적사항, 상담내용 등)	1호	노인복지법제39조12항
민원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1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26조
직무발명	직무 발명의 내용 (※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1호	발명진흥법 제19조

업무유형	비공개 대상 정보명	근거	사유(법령)
사회복지사업 업무추진	사회복지사업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	1호	사회복지사업법 제47조
건강진단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
상담	성폭력 범죄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	1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 상담 및 지원관련 개인정보	1호	장애인복지법 제33조 제2항
정신질환자의 정보보호	정신질환자에 관련된 직무를 하면서 알게된 개인정보 등	1호	정신보건법제42조
지방세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1호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제69조
통 계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1호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통신비밀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	1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행정심판 위원회운영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1호	행정심판법 제41조
소송	공판 개시 전 소송에 관한 정보	1호	형사소송법 제47조
환경분쟁조정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한정보	1호	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후천성면역 결핍증감염자 보호관리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에 관한 기록관련 자료 등	1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업무유형	비공개 대상 정보명	근거	사유(법령)
세무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공직자 재산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건강진단	감염자의 진단.검안 및 보호에 참여한 자 신상정보 감염자의 신상정보	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을지훈련 및 총무계획	을지훈련과 관련된 사건 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총무계획과 관련한 각종 비밀문서 등	2호	을지연습의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적의 침략을 대비학자 하는 훈련의 취지를 훼손할수 있음
보안업무	비밀취급인가자명단, 전시임무카드 및주요조치사항(전시보안시설물안전지출 파기계획)등 보안업무관련 각종 비밀문서 및 대외비 문서	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주요행사 계획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정보(주요 인사가참석하는 행사의 시간, 장소, 이동경로 및 동선 등을 포함하는 세부일정이나 숙소정보) ※ 행사 종료 후 공개 여부 재검토	2호	공개될 경우 대통령, 국무위원, 해외 주요인사 등 귀빈의 거처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음
관계기관의 비공개 요청 정보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사항으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통신망 경로(IP 대역), 시스템 보안 솔루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무선통신망 채널(주파수),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부분 보고, 전자정부 통합망 구축계획 및 구성도,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자료,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시스템 로그파일)	2호	공개될 경우 해킹이나 사이버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어 행정정보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음
민방위 훈련 및 인력동원	민방위교육훈련실시결과보고서 등 민방위교육관련 문서 및 전시인력동원 및 민방위경보시설운영 관련정보	2호	공개될 경우 적의 공격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정보보안 일반	.을지훈련관련기본계획, 자체사건 계획, 상황보고서 .민방위교육 관련문서 및 대상자정보 .공익근무요원관리 .비상급수계획수립(국가보안목표 시설의설계도면) .중점관리지정업체 상수도시설 긴급복구 실시계획서 .중요시설물 보호구역 설정내용 .전시 중요보안시설물에 대한 안전 지출 파기계획	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당직	공공기관 당직명령부	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업무유형	비공개 대상 정보명	근거	사유(법령)
비밀기록물관리	비밀기록물 분류 사유	2호	비밀에 해당하거나 공개될 경우 보안 유지에 지장을 토래할 개연성이 있음
전시대비	전시에산편성의세부내역, 전시주요조치사항에 대한 수행계획, 인력동원 계획, 전시소방대책	2호	공개될 경우 전시의 국정 운영 상황 등을 알 수 있음
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안보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비공개로 진행되는 위기대응 훈련 일정, 참가자, 목표, 결과에 대한 정보,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태세	2호	공개될 경우 악용되어 위기상황에대한 적절한 대응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청사관리	청사 입체도면, 청사 도면(단면도) 중 보안시설(전기기계실, 상황실 등), 경비 초소 위치, 순찰 시간표 및 순찰경로, 경비 및 순찰일지 ※ 청사 방호업무에 직접적 해를 끼칠 개연성이 없는 정보는 공개	2호	공개될 경우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
주요시설 및 위험물 관리	폭발물, 인화성 물질, 유독성 화학약품 등 위험물 보관시설 위치, 도면 및 구조도, 상수도관 배수관망도, 위험물 운반차량 운행 일시, 운행경로 관련 계획,	2호	공개될 경우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
위법행위 등 신고	각종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통보자, 참고인 명단	3호	공개될 경우 가해자 및 이해당사자의 보복등으로 개인의 생명, 신체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각종연구용역	최종공표까지 충분한 전문적 검토를 요하는 중간연구 성과 등	3호	공개될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개인재산	개인의 납세실적 등 개인 재산에 관한 정보	3호, 6호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재산 현황을 추정할 수 있어 범죄에 이용되거나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청사방호업무	공개될 경우 공공재산, 공공안전에 현저한 위해 우려가 있는경비일지, 순찰일지, 경비시스템 관리 일지 등 청사방호.방법에 관한 사항	3호	공개될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인감 및 주민 등록, 여권	인감업무.주민등록, 여권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호, 6호	공개될 경우 위.변조되어 범죄목적 등에 사용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부동산	특정 지번의 매매가, 보상금 산출내역 및 보상금액	3호	공개될 경우 특정 개인의 재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음
방법용 CCTV 관리	방법 CCTV 위치정보	3호	공개될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업무유형	비공개 대상 정보명	근거	사유(법령)
재판 및 소송정보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진행사항 보고서,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결과, 사실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완료 후 개별사안에 따라 공개여부 재결정	4호	공개할 경우 진행 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수사	수사사건 관련 증거자료, 진행절차, 진행보고서, 참고인 명단, 의견서 등 내용이 기록된 자료 ※ 완료 후 개별사업에 따라 공개여부 재결정	4호	수사 진행 중에 공개되면 피의자가 알게 되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각종 위원회, 심의회 등 기타 회의 관련 자료	심의회 등 기타 회의 관련 자료 .회의내용이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정보 .회의내용 공개로 인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5호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정보로서 공개 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구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정보(내부심의 중인 안건,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 교환의 기록 등)	5호	확정 이전에 공개 시 내용의 변동으로 인하여 해당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인허가 등의 규제관련정보	개별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사항(특정 개인식별이 가능한문서,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 정보는 비공개)	5호	사업이 발주 또는 개시 전에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령 입안	법령 또는 고시의 입안에 대하여 타 행정기관 등 관계자와의 협의·조정 에 관한 문서로, 공개함으로써 당해 입안사무 및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정보 (단, 입법예고안, 시의회 제출 법령안, 그 이유서, 신규조문대조표는 공개원칙	5호	법률 개정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감사·조사업무	불시감사·조사계획, 직무감찰계획등 중앙 및 시 자체감사와 관련된 사항	5호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감사·조사업무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계획, 감사결과 보고서,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등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 정보 ※ 종료 후 공개 검토	5호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예산안 심사	실과별 예산편성 요구 및 심의조서 등 예산편성 과정에 있는 정보	5호	예산 확정 이전에 공개 시 예산 타당성 심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단체교섭 정보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단체교섭 요구 안건별 소관부서 검토자료	5호	교섭 완료 이전에 공개할 경우 교섭의 난항, 지연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성과상여금지급에 관한 사항	성과상여금 지급명부 및 심사위원회 심사 등에 관한 정보	5호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업무유형	비공개 대상 정보명	근거	사유(법령)
공무원 인사관리	임용, 인사교류, 근무평정, 승진심사, 교육훈련, 징계,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 될 경우 내부인사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호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서대문구민 대상수상관련	후보자 공적사항, 심의과정,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내용 등 내부검토 및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자료	5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위원회 운영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중인 사항,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위원별 발언내용, 회의록 등 심리적 부담으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5호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정보로서 공개 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진행 중인 입찰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 식별가능한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호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진행 중인 입찰 정보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사항 등 개인·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명부 등)	5호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진행 중인 입찰 정보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설계·시공 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5호	공개될 경우 당해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시험	·다른응시자의 성적, 석차 ·면접시험 채점표, 시험공고전의 시험 실시 계획	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확정 전, 사업검토서, 사업계획서, 연구용역중간 보고, 심사위원 부호자명단, 발표전 위원회 보고서 ※ 확정후 공개	5호	사업이 발주 또는 개시 전에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위원회 회의록중 발언자 성명, 회의 녹음파일	5호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정보로서 공개 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입찰계약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신청서, 서류, 예정가격조사, 계약내역사양서 ※ 확정후 공개	5호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감독,지도점검	불시 지도점검, 단속, 조사 계획	5호	증거인멸 등 지도감독 등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감독,지도점검	점검·평가 점수 및 순위	5호	개별 기업 등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는 정보

업무유형	비공개 대상 정보명	근거	사유(법령)
민원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 단, 당해 민원인이 공개에 동의 시 제외	6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 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각종위원회 운영 관련	각종 위원회 위원 개인주소, 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형 정보	6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개인정보(공무원)	개인 급여 및 수당내역, 자택주소, 개인이메일, 개인 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사생활로인한 징계내역, 개인 평가기록, 인사기록카드, 개인평가기록, 채용후보자 명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 단순 통계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공개	6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개인정보(일반 구민)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주소, 개인이메일,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가족여부, 보조금 수령여부, 학력 및 경력,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자격증 소지여부, 종교, 범죄사실 기록, 납세 및 소득내역, 재산	6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개인정보(일반 구민)	도시계획관련 주민동의서	6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 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